

**[사례 1] '19.3.1에 신규로 발령받은 교육공무원의 연가일수는**

- 공무원연금법 25조1항에서 3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자가 '19.3.1에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, '19연도의 종사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이므로 1개월을 근무한 '19.4.1부터 연가가 생성되며 9일의 연가를 부여함

$$\frac{\text{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해당연도연가일수}$$

$$\Rightarrow \frac{10(\text{월})}{12(\text{월})} \times 11(\text{일}) = 9.16(\text{일}) \rightarrow \text{반올림} \rightarrow 9(\text{일})$$

- 단, '19.12월 말 이전에 병가, 휴직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가용연가일수는 조정되며 초과사용한 경우 결근처리

**[사례 2] 2월말, 8월말 퇴직예정자의 연가일수는**

- 연도중 퇴직예정자의 경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여 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출하며, 1.1부터 퇴직시까지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만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부여함.

$$\frac{\text{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해당연도연가일수}$$

■ 2월말 퇴직예정자의 연가일수

$$\Rightarrow \frac{2(\text{월})}{12(\text{월})} \times 21(\text{일}) = 3.5(\text{일}) \rightarrow \text{반올림} \rightarrow 4(\text{일})$$

■ 8월말 퇴직예정자의 연가일수

$$\Rightarrow \frac{8(\text{월})}{12(\text{월})} \times 21(\text{일}) = 14(\text{일})$$

**[사례 3] 재직기간이 4년인 교육공무원이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가 가산이 1일 있는데, 9.1.자로 휴직하면 연가일수는**

-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여 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출하며, 해당연도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연가일수와 가산연가일수를 합한 일수임

$$\frac{\text{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해당연도연가일수}$$

$$\Rightarrow \frac{8(\text{월})}{12(\text{월})} \times (17+1)(\text{일}) = 12(\text{일})$$

**[사례 4] 재직기간 2년으로 15일의 연가일수를 보유한 교육공무원이 연가, 반일연가, 지각, 조퇴, 외출을 합산하여 3일 6시간일 때, 12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**

- 휴가(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)는 휴가일수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, 15일의 연가일수 중 3일 6시간을 사용하였다면,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연도 잔여 연가는 11일 2시간 임
- 12일의 연가를 사용하면,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15일보다 6시간을 초과로 사용하였으므로 다음 해 부여하는 연가에서 초과 사용한 6시간 공제

**[사례 5] '20년 10월에 휴직하여 연초 부여받은 연가 21일 중에 18일만 사용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19일 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경우**

- 초과 사용한 연가 1일분에 대해서만 결근 처리(급여 공제), 초과 사용한 5시간은 향후 복직하는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